

보험시장의 변화와 화보협회의 역할



박 현 식
(기술관리부 부장)

1. 머리말

요즈음에는 T.V 등 매스컴과 각종 교육, 기업의 발전계획 수립시 자주 거론되는 단어가 국제화, 자율화이다. 이에 적응하기 위해서 고객만족, 서비스 극대화, 신기술 개발, 외국어 능력향상 등 조직 나름대로의 실정(實情)에 맞는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자기가 속해 있는 조직이나 단체가 살아남기 위해서 국내 경쟁 뿐만 아니라 국제적 경쟁에서 이겨야 하는 생존전략을 세우고 추진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왜 갑자기 정부, 기업 할 것 없이 이러한 분위기에 휩싸여 시원스런 해결방안을 찾지 못해서 고심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냉전시대를 거쳐서 경제 전쟁시대로

돌입하면서 우리나라 경제현실은 자본력, 기술력, 창조력 그리고 천연자원 모두에서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져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하지만 우리는 짧은 시간에 선진국과 경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성장하는 저력을 보이고 있으며, 모든 지혜(智慧)를 모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가능성은 찾아 나가고 있다.

이러한 현실(現實)은 보험분야에도 예외일 수 없다.

특히, 보험 계약자의 이익을 근대화 시킬 수 있도록 보험상품의 판매 및 요율체계의 변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보험업계의 변천 방향과 23년간 방재업무를 수행하여온 화보협회의 업무내용을 재조명하여 보험시장의 변화에 따른 화보협회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기로 한다.

2. 보험 시장의 변화

가. 금융 자유화와 보험산업

(1) 금융환경의 변화

국경을 초월한 무한경쟁에 돌입하고 있는 세계의 금융환경은 금융산업의 대형화와, 겸영화(兼營化) 추세로 발전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1993년 7월 신경제5개년 계획을 수립 금융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바, 금융시장의 자율화와 시장원리에 따라 운영하게 함으로써 경쟁을 제고하고 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금리(金利)를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되고자 하므로써 자금수급 조절기능과 책임경영체제가 확립되도록 하며,

둘째, 성책금융의 축소, 부실채권의 정리, 각종 여신규제 폐지 등으로 자금운영의 자율성을 확대,

셋째, 통화관리에 있어서 직접규제에서 간접규제 방식으로 전환하여 통화운용의 효율성을 제고,

넷째, 금융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금융감독기능을 강화,

다섯째, 금융기관을 전문화, 대형화하고 금융산업 업무영역을 재조정,

여섯째, 외환 및 자본시장의 개방화를 촉진하고, 금융설명제를 실시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에따라 금융환경의 대폭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2) 금융 자유화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금융 자유화의 중요사항은 금융상품 가격에 대한 구제완화, 금리 자유화와 금융기관의 업무영역확대(겸업주의)로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보험산업에서는 이차위험(利差危險)과 투자위험 등에 증가하고 상품판매시 유동(流動)위험이 증가하는 등 보험산업 운영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금융구조 개편에 따른 업무영역의 기본방향을 은행, 증권, 보험사 고유업무의 분업주의를 원칙적으로 유지하되, 필요시

자회사 방식을 통한 타업무 진출을 허용도록 하고 있다(〈표 1〉 참조).

보험회사에 대한 세부지침은,

① 보험기관으로서 특성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기관 투자가로서 역할을 하기 위한 조치로서 보장성 보험의 취급을 확대하고 소비자의 다양한 금융수요에 부응하는 제휴상품 개발을 확대하고,

— 보험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타 금융기관과 제휴한다.

— 자산운용은 장기 유가증권에의 투자를 확대하도록 한다.

② 제3분야(상해, 질병, 간병보험)에는 생·손보사 상호 진출을 허용한다.

③ 은행의 국·공채 창구판매를 허용할 경우 보험회사에도 허용한다('94. 9. 1 허용).

나. 손해보험시장의 변화

W.T.O. 출범과 함께 보험시장의 변화는 개방화, 자유화 조치에 따라 국내업체는 일시적으로는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편 세계화 차원에서 겪어야 할 과정이므로 오히려 발전의 계기로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기업형 물건에서 가계성 물건에 이르기까지 모든 물건에 대하여 '95년 4월부터 2년간 단계적으로 범위요율 체계를 시험적용하되 자유 요율화 하며, 국내 상품을 국제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 국문약관 및 요율체계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기로

〈표 1〉 금융기관간 업무영역 조정방안('93년 7월 발표)

구 분	개 편 방 안	조 정 내 용
은 행	• 종합은행	• 예대업무 및 종합신탁업무를 투자은행 업무로 취급
	• 제한적 겸업은행	• 예대업무와 종합투자은행업무 허용
증 권 보 험	• 종합투자은행으로 육성	• 투자신탁 포함여부는 추후 결정
	• 제한적 겸업	• 자회사 설립을 통해서만 타금융업무 진출
비 은 행	• 신용금고	• 지역사회 서민금융의 전문화된 단일 은행
	• 리스, 카드, 팩토링 선물중계, 벤처, 투신브로커회사	• 단일 업무만을 전문취급하는 단종금융기관으로 육성
	• 단기금융	• 종합투자은행으로 지향하되 투자신탁업무 취급여부는 추후 결정
	• 투자신탁	• 증권투자신탁회사로 전문화하는 방안과 종합투자신탁기관으로 육성하는 방안

하고, 상품인가 절차도 간소화 하여 보험상품 개발에 자율성을 제고하도록 하며 '자유상품,' '보고상품,' '신고상품과 같이 인가제도를 신설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업법 개정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 허가받은 외국보험사업자에 대하여는 내·외국인 동등한 대우 원칙에 따라 내·외국사업자 간의 차별을 폐지.
- 보험회사 점포의 설치, 이전, 폐쇄는 현행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 보험대리점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
- 보험산업의 국제화를 추진하여 UR후속 협상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중개인(Broker)에 관한 법규정을 확충.
- 기타 규제완화 및 자유화 조치에 따른 관련 규정 보완(〈표 2〉 참조)

〈표 2〉 보험산업의 규제완화 및 자유화

연도	추진 내용
1994년	• 보험규제완화 추진 • 표준약관 개정 시행
1995년	• Cross-border 허용 • 보험업법 개정, 시행
1996년	• 독립대리점 허용
1997년	• 보험브로커제도 도입 가능성
1998년 이후	• 재보험산업 자유화

* 1. 자유상품 : 손해보험회사가 상품을 개발 또는 변경하여 재정원장관에게 신고 또는 보험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안하고 판매할 수 있는 상품.

* 2. 보고상품 : 손해보험회사가 상품을 개발 또는 변경하여 판매한 후, 이의 변경내용을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상품.

* 3. 신고상품 : 손해보험회사가 상품을 개발 또는 변경하여 이를 재정원장에게 신고한 후 판매하여야 하는 상품.

판매조직으로는 직급, 모집인, 대리점 조직, 상호협정에 의해 운영되는 공동인수(pool)제도가 있는데 이중 직급제도는 기업보험 위주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위험을 취급하고, 모집인과 대리점제도는 가계성 보험 등 주로 대중 보험에 주력하여 왔으나 미국, 영국 등 보험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보험중개업이 활성화되어 보험기술 및 판매분야의 노하우(know how)를 축적하고 있어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표 3〉, 〈표 4〉 참조).

따라서 국내에서도 1998년 브로커(Broker)제도의 도입예정에 대비하여 국내 보험사들의 판매조직의 전문화, 대형화 및 보험인수기술이 요구되는 리스크(Risk) 처리능력을 가진 전문인력의 양성을 필요로 하고 있다.

3. 화재보험협회의 업무

우리나라 헌법 제34조 제6호에서 "국가는 재해(災害)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 다수(多數) 국민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는 사회위험(社會危險)으로서 국가가 관리 하도록 하고 있으며, 1973년 2월 6일 법률 제2482호로 "화

〈표 4〉 총거수보험료 모집형태별 시장지분(미국)

단위 : 1,000US\$

전속대리점 및 직할	Broker 및 독립대리점	재보험
110,500	122,000	17,500
44%	49%	7%

〈표 3〉 미국 보험판매조직의 현황

구 분	대 리 점		(보험중개인) BROKER
	전 속 대 리 점	독립 대 리 점	
의의 및 형태	1사 전속으로 1개의 보험자를 대리	1 또는 2사 이상의 보험자를 대리	보험사 비전속으로 피보험자를 대리
기 능	보험계약체결 대리	좌 동	보험계약체결 중개
조직의 성격	보험자와 독립된 외부 전문 기관	좌 동	좌 동
영업 성 향	가계성 보험 등 대중보험에 주력	대형위험 등 기업보험에 주력	좌 동

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 가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한국화재보험협회(이하 화보협회)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

화보협회의 설립 목적은

-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고,
- 신속한 재해복구를 보장하며,
- 인명 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토록 하고 있다.

세부적인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안전점검(安全点検)

안전점검은 현장실사(現場實査)에 의한 점검이므로 직접적인 예방대책이라 할 수 있다. 화재 위험 요소, 소방시설, 피난시설, 건물구조, 연소 확대방지 조치 등을 종합진단(綜合診斷)하여 개선책을 마련하여 건물소유자로 하여금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므로써 방재효과를 거두는 것이다. 부가(附加)하여 화재보험 요율산출에 필요 한 각종 데이터(Data)(시가기준, 용도, 구조, 방화구획, 소화설비 등)을 파악하여 요율 체계에서 적정한 요율과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대형 공장인 경우 PML(Probable Maximum Loss)를 산정하여 위험보유(危險保有)에 필요한 자료와 앞으로 자유요율 체계에 필요한 기술을 축적하고 있다.

또한, 우량할인 현장조사 업무와 소화설비 할인조사 업무도 안전점검시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어 화재보험과 관련한 제반 위험요소가 전반적으로 파악되고 또한, 대책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한편, 특수건물의 대상은 인구 50만 이상 11개 대도시의 6층 이상 건물과 1,000m² 이상의 공장건물 등으로 '96년 3월말 현재 총 23,426건 이 해당된다.

나. 조사연구(調査研究)

방재기술 조사 연구는 점검 실무상 발생하고

있는 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와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그리고 보험의 위험관리를 위한 연구 등 대상 분야가 광범위하다.

(1) 과학적인 점검기준

국가에서 필요한 안전관계 법규(소방법, 건축법, 전기사업법, 가스관계법 등)도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으나 손해보험업계에서 활용성이 높은 기술 기준은 미흡하기 때문에 외국기준이나 국내 법규를 적용하는 설정이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NFPA Cord(NFC)처럼 KFPA Cord (KFS)를 그동안 축적된 기술을 근간으로 현재 기준을 제정하고 있는 중이다.

특히, 국제화에 걸맞는 안전기준을 보급하기 위해서 NFPA Cord를 완역하여(미국 NFPA 본부와 협약) 방재 및 보험업계에 제공하므로써 국가방재에 대한 기술기준을 한 단계 올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2) 방재기술 연구

외국 방재단체인 미국의 NFPA, UL, FM, 영국의 FPA, 카나다 ULC, 일본의 소방연구소, 건재시험센타 등과 상호 정보교환을 하고 있으며 화재사례 Case Study, 방재기술 자료발간, 원인별 화재예방 대책 등의 연구서 발간과 소방설비의 표준설계 지침과 신기술(新技術) 정보를 쉽게 전파하기 위해 정기 간행물인 방재와 보험과 방재기술지를 발간하고 있으며 특히, 화학공장의 EML(Estimated Maximum Loss) 평가 기법을 개발하여 실용화 단계에 이르고 있다(Software Version II 개발).

다. 교육홍보

화재예방 활동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추진하는 홍보업무의 추진은 T.V나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를 포함하여 불조심, 표어, 포스터 공모 행사와 불조심 어린이단 운영, 전국의 우수 소방관의 사기 진작을 위해 소방안전 봉사상 시상(이는 1계급 특진과 포상금이 수여됨) 행사 등 활발한 홍보활동으로 화재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문은 방재 종사자를 대상으로 소방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구조, 원리를 중심으로 한 작동 방법 등 방재실무교육을 일반과정과 전문과정으로 구분하여 방재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라. 방재기술 정보 제공

축적된 방재기술과 정보를 관계자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정보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으며(회원수 535명)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P.C.통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마. 방재시험연구소 운영

시험이 없는 기술 축적은 한계가 있음을 인지, 시험을 통한 기술축적과 국내 방재설비 등에 대한 성능시험을 할 수 있는 부설 방재시험연구소의 설립운영은 손해보험업계의 선진화를 위한 지름길이라 하겠다.

시험항목은 건물구조의 내화성, 내열성, 내장재의 난연성, 소방설비의 성능, 평가, 방염성능 시험 뿐만 아니라 화재 모형실험도 가능하게 되어 있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재업무 수행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소방설비의 경년변화 시험은 Project 사업으로 10년간 예정으로 기획되었으며 이미 8년

째 계속하고 있어 2년이 경과되면 국내 소방시설의 수명을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시험연구소의 능력을 가늠하는 인정 여부는 국내에서는 내무부, 건설부, 노동부, 해운항만청, 수산청으로부터 시험기관 지정과 공업진흥청으로부터 시험기관 지정과 공업진흥청으로부터 화재안전분야 공인시험기관(KOLAS)으로 지정되었으며, 해외 기관으로는 영국의 로이드 선급협회, 일본의 해사협회(NK), 미국의 선급협회(ABS)에서 국제적 시험기관으로 인정되었으며, IMO(국제해사기구)의 시험기관으로 등재되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기관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바. 기타 활동

- 대단위 공장 등에 대한 위험진단
- 국가 주요기관의 기술지원
- 보안을 요하는 물건(국유·방위산업체)에 대한 보험업무 등이 있다.

4. 맷는 말

미국의 NFPA나 UL처럼 오래된 역사는 갖지 못하였지만 어려운 여건하에서 화보협회에서 위험관리를 23년여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국가적으로 꼭이나 다행스럽고, 그동안 축적된 기술을 변화하는 보험시장에 유효 적절히 활용될 수

<표 6> 특수건물 대상 현황('96년 3월말 현재)

구 분	국 유	학 원	병 원	6층 이상	호 텔	공연장	방 송	유홍장	학 교	공 장	시 장	옥 판	아파트	계
서 울	439	76	198	4,609	149	51	14	21	134	1,505	473	289	1,800	9,758
부 산	149	28	77	891	78	17	3	15	27	1,328	142	21	1,402	4,178
대 구	68	13	22	235	31	13	3	10	20	1,772	100	16	631	2,934
인 천	82	7	27	280	10	12	0	7	22	1,911	63	29	709	3,519
대 전	53	9	15	235	20	4	5	1	10	234	49	23	294	962
광 주	52	6	27	204	12	11	3	2	9	286	23	9	351	995
전 주	29	6	14	76	2	5	3	0	10	88	12	4	198	447
울 산	18	1	12	142	7	5	2	2	5	330	31	6	432	993
부 친	7	1	7	77	4	2	0	1	6	333	10	16	230	694
수 원	42	1	12	106	5	7	1	2	8	110	20	27	142	483
성 남	7	2	5	54	1	1	0	1	3	157	24	25	115	395
계	890	146	392	6,672	319	118	33	58	237	7,454	893	397	5,817	23,426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변화하는 보험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개선의 여지는 많이 남아 있다. 따라서 화보협회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발전적인 변화가 모색되어야 한다.

첫째, 보험 인수기법(Under writing)을 보다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는 기술력과 자본력이 앞선 외국 대형 브로커(Broker) 회사들의 국내 상류과 국제위험자문회사(IRMG)의 진출에 대비하여 경쟁력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원수사(原受社)와 화보협회의 위험관리 업무의 차별화(差別化)에 대한 수용자세가 필요하다.

손보사마다 개별적이고 독자적인 위험관리 업무 수행은 비경제적인 요소와 객관성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위험관리 업무에 한계를 갖게 될 것이고 이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화보협회가 아래 업무를 계속 수행 발전 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 위험관리의 정보센타 역할
- 위험관리 기술에 대한 조사 연구, 교육, 홍보
- 위험관리 기법, 방재관련기준, 조사 연구, 보급
- 방재시험연구소 운영
- 요율의 사정 등 객관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

– 위험진단, 소화설비 할인, 설계도면 검토 등

또한, 위험이 적은 물건은 원수사, 위험관리 팀에서 담당하므로써 화보협회와 원수사와의 역할을 분담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변화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에 대응하는 조직체계와 조직원의 자기 혁신이 필요하다.

변화의 적용에 결림돌이 되는 각종 규정 제도, System은 과감히 정비하고 현장 완결형 체제의 확립으로 신속한 업무 Process가 구축되어야 한다.

전환시기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모든 구성

원은 냉철한 자기 성찰(省察)과 실천을 위한 결단력이 요구되고 보다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하다.

손해보험업계는 업계(業界)의 공동발전을 위해서 화보협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공동 방안은 좀더 구체적이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공동인수 요건의 대형 공장의 위험진단은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 자료가 요구되므로 화보협회에서의 제공된 자료가 보험업무에 필수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손보업계의 사회 환원 측면에서 볼 때 캠페인, 홍보, 조사, 연구 등에서 직접적으로 그 기능을 다할 수 있겠지만 화보협회를 창구로 활용하는 방법이 적절하다고 본다. 그 이유는 방재 활동이 손해발생 빈도와 크기를 줄임으로써 나타나는 실질적인 효과도 보험자에게는 영업이익이 보장되고, 보험계약자에게도 보험료 경감이라는 이익과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인명과 재산이라는 국력손실을 줄이는 업무이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화보협회의 입법(立法) 취지와 상통(相通)하는 것이다.

국가는 화보협회의 발전을 위해서 변화하는 여건에 맞는 법(法)의 개정이 필요로 하고 있다.

– 업무 영역은 화재 뿐만 아니라 손해보험 위험담보 전반으로 확대

– 특수건물 대상은 특수지역(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설정보다는 전국적으로 확대하되, 위험이 대형화되므로 업무의 경제성을 고려하여 6층 이상 건물 등에서 11층 이상 건물 등으로 상향조정이 필요하다.

이에 앞서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 화보협회의 재정적 자립의 기틀마련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관련업계 정부 모두 합심하여 외부환경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국제경쟁력 강화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④